◎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839호

2026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재공모

보건복지부는 근거 중심의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의 상세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RFP)” 확인 요망

□ 사업목적

○ 근거 중심의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

□ 사업단 연구목표 및 지원 내용

○ 연구목표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연계 성과 활용·확산
- 한의 의료기술의 급여 반영, 신의료기술 인증
- 한의 임상연구 수월성 및 질 제고
- 양약·한약 병용투여 지침 개발 및 활용 기반 마련
-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 센터 구축

○ 지원내용

지원 분야	지원 내용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질환별 한의 임상진료지침(CPG) 개발 및 인증 지원 - 대표 진료환경별 한의표준임상경로(CP) 개발 및 적용 지원 - 임상연구를 통한 질환별 한의 임상진료지침(CPG) 고도화 지원 -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의 보급 및 활용 지원

지원 분야	지원 내용
한의의료 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 임상연구를 통한 한의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효과 연구 지원 - 문헌 및 자료를 활용한 한의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효과 연구 지원 - 적정 한의 치료기술 개발 및 경제성 평가 지원 - 한의치료기술의 정책 반영을 위한 자료조사, 정책 개발 지원 - 연구 결과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및 신의료기술 인증 지원
약물상호 작용 연구	- 양약·한약 약물 상호작용 연구 지원 - 양약·한약 병용 투여 지침 개발 지원 - 양약·한약 병용 투여 지침 보급 및 활용 지원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구축 근거 자료 확보
질환별 한의중점 연구센터	- 질환별 새로운 한의진단·치료 기술 개발 지원 - 질환별 한의진단·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지원 - 질환별 한의진단·치료기술의 작용기전 규명 지원 등
한의중개 개인연구	- 한의 의료기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및 탐색연구 지원 - 한의약 전통 지식을 활용한 독창적인 신규 아이템 발굴 지원
사업 운영 지원	- 연구주제 우선순위 선정 및 추진 분야별 세부 기획 - 예방·진단·치료, 요소기술(한약·침·뜸·부항 등), 질환의 층위 및 범주 구분 - 사업간 개별 과제 연구 내용 간 중복 조정 - 세부 과제의 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계획 수정·보완,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과제수행 장애요인 해소(식약처 IND 승인, 신의료기술 신청)를 위한 선도적 지원 * 약물병용 투여지침 개발에 필요한 연구결과 분석, 진행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공 - 세부과제 중간·최종평가 등 연구 관리와 지원 * 임상연구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세부과제 연구비 조정 포함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결과 확산 및 정책화 - 경제성 평가 지원

□ 사업 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기간 : 2020년 ~ 2029년, 총 10년(2+3+2+3)이내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간	연구비	선정 예정 과제수	주관 연구기관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단장	10년(2+3+2+3) 이내	총 1575.9억원 이내	1	한국한의약 진흥원

※ 연도별 지원 예산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단 추진체계

□ 사업단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구성 및 출연금 편성 등 관리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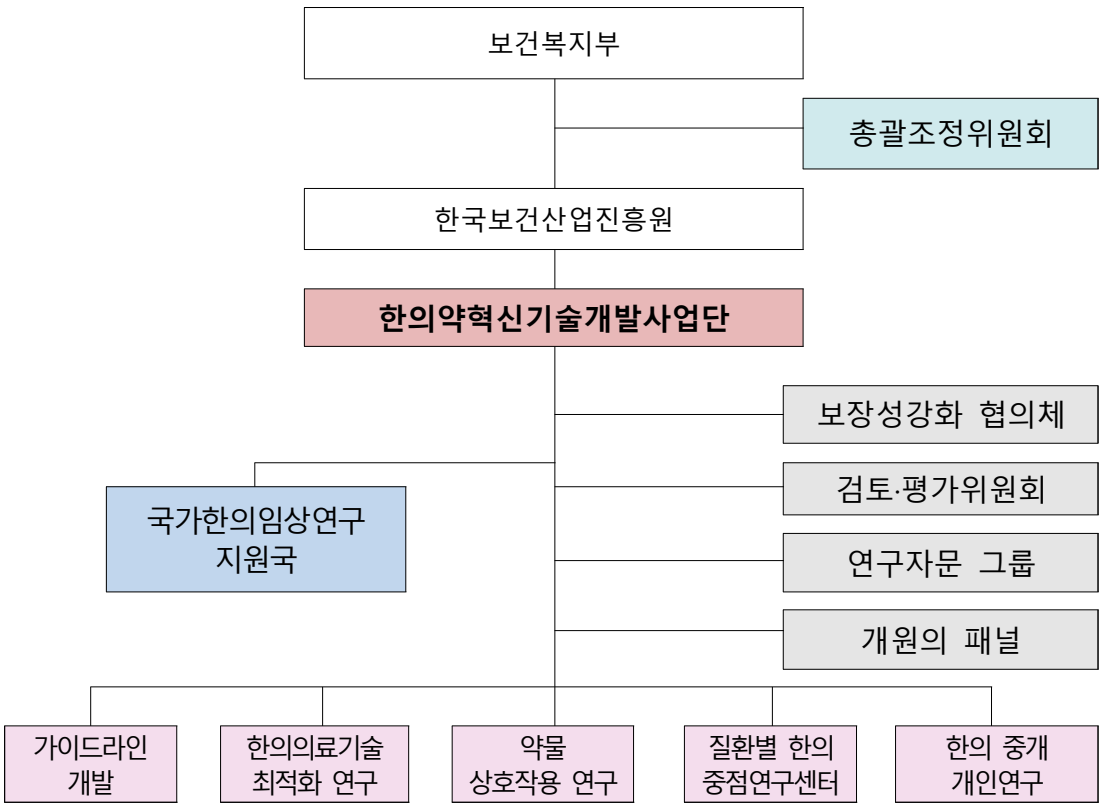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업단 관리, 사업단 평가 집행 정산 과제 공고 및 사업단 지원

○ **(총괄조정위원회)** 사업의 중장기 투자방향 및 시행계획 심의, 연구주제 우선순위 확정 및 사업단 조직·운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 **(사업단장)** 실질적인 사업 관리·운영을 담당하며 사업단 소관 연구개발과제기획 및 선정, 평가, 정산, 관리업무 등 사업전반의 자율적, 안정적 운영, 기술개발 성과 활용 지원 등의 기능 수행

○ **(사무국)**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의 업무 및 연구관리 행정업무 지원 등

<사업단 추진체계>



Ⅲ. 사업단장 역할 및 자격기준

□ 사업단장 역할

○ **(권한)**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운영 및 연구과제 관리 전반에 걸친 책임과 권한을 가짐

○ **(임무)** 사업단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사업단 내 모든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사무국 구성·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목표한 성과 달성

-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의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사업단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사업의 전주기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선행사업인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연구개발 성과 포함)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따로 정한 사항

□ 사업단장 지원요건

○ 한의약 등 해당분야에서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영관리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로 해당분야에 경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전문성과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지원 자격(최소 경력 요건)
▪ 정교수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 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10년 이상 ▪ 정부출연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 10년 이상 ▪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15년 이상

□ 사업단장 임기

○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단장 선정일로부터 사업단 종료일까지(~'29년)로 함

※ 연구성과 미흡 또는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시 해임·교체될 수 있으며, 지원중단, 예산삭감, 제재처분 등 엄중한 사업관리 예정

○ 주관연구기관은 한의약진흥원으로, 사업단장 임기기간 동안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사업단장 근무조건

○ 사업단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 관리규정」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체결하는 협약 등에 따라 연구사업 수행 및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전념해야 함

- 사업단장은 전임근무를 원칙으로 함
- 타 업무 참여(보직, 겸직 등)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불가(해당사업 연구수행에의 전념)
- 본 사업 참여 전에 수행하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단장 임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를 중단하여야 함

○ 다만, 총괄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사업단장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경력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함

○ 동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활동(주식보유, 겸직, 참여 등) 불가(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사업단장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될 수 있음

Ⅳ.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사업단장 신청은 로그인 후 '연구자 권한'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전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연구업적 등)	전산입력사항 입력	신청서 및 첨부서류(hwp) 작성 및 업로드	기관담당자의 사업단장 신청 확인 및 승인	**사업단장 신청 접수완료**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기관담당자)**	

<주의사항>

- 기관용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포함)는 **범용인증서만 사용 가능**(은행용 등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 사용 불가)하고, 없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
-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마감 2일전부터)**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

□ 서류 제출기한

※ **신청마감시간(14: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평가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 예정(2026년 11월 중)

※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대상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일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2026. 11. 13(금) 14 : 00	2026. 11. 13(금) 14 : 00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완료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산인증 필수(미인증시에는 과제접수 불가)

<과제 신청 전 숙지사항>

○ 경쟁률 및 발표평가 일정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 예정

○ **과제 신청마감시간(14:00) 엄수 (마감 시간 이후 연장 불가)**

○ 연구자는 **제안요청서(RFP), 공고안내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

- 연구책임자(사업단장) 지원자격, 연구개발비 규모 및 기간, 지원내용 등 관련 내용 확인 필요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를 준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연구책임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점검하며 참여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과제신청 전 본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필요

○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유사성 검토

Ⅴ.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구분	주요내용	수행
사전검토	• 신청자의 자격, 참여제한, 해당 첨부서류 등 검토	전문기관
⬇		
발표평가	• 사업단장 역량, 사업단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형태로 발표평가	과제평가단
⬇		
평가결과 종합	• 평가위원별 개별평가(점수부여, 의견작성 등) 실시 후 평가결과 종합 검토	과제평가단
⬇		
평가결과 심의	• 사업단장 선정평가 결과(안) 심의·의결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
⬇		
사업단장 확정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 등 확정 • 사업단(장) 확정 및 임명	보건복지부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기준

○ 사업단장 연구역량 및 사업단 운영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 예정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발표평가	1. 사업단장 역량 (50)	○ 사업단장의 연구역량(30) - 사업단장의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탁월하며 우수한가? ○ 사업단장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파급효과(10) - 사업단장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우수한가? ○ 사업단장의 연구사업 기획·관리 경험 및 능력(10) - 사업단장의 연구 사업을 기획·관리한 경험이 본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합한가?

	2. 사업단 운영계획 (50)	○ 연구개발 추진전략의 적절성(40) - 사업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비전 및 핵심 성공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20)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20) ○ 사업단 구성 및 경영계획의 적절성(5) - 사업단의 조직 구성 및 경영계획이 사업단의 목표에 맞게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사업단 종료 후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계획(5) - 사업단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확산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Ⅶ. 추진 일정

○ 2026. 11. 03.	사업단장 재공고
○ 2026. 11. 13. 14:00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 마감
○ 2026. 11. 중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 2026. 11. 중	평가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 2026. 11. 중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 2026. 11. 말	선정평가 실시
○ 2026. 12. 초	선정평가 결과 및 심의
○ 2026. 12. 중	최종 확정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Ⅷ. 기타사항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

※ 상세내용은 www.htdream.kr→ 자료실→ 법규/서식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 향후 과제관리 등 공모안내서와 RFP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www.htdream.kr → 자료실→ 관련법규/매뉴얼에서 확인)

* (사업단 운영관리)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총괄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평가관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 (성과관리 관련) 보건의료R&D 연구성과 관리 매뉴얼

Ⅸ. 문의처

○ 사업공고 열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등

○ 사업 담당자 안내

담당자	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단 신주영	Tel. 043-713-8696 E-mail : jy4212@khidi.or.kr

붙임 1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제안요청서(RFP)

세부사업명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유형 해당여부	☐ 혁신도전형 R&D ☐ 경쟁형 R&D	
제안요청서명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공모유형	☐ 지정공모 ■ 품목지정 ☐ 자유공모 ☐ 정책지정	TRL 단계 (시작~종료) *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	해당없음	기술료 납부대상	X

▶ 지원목적

○ 근거 중심의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간	총 연구개발비	선정 예정 과제수	주관연구기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10년 (2+3+2+3) 이내	1,575.9억원 이내	1	한국한의약진흥원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사업단장은 선정일로부터 사업단 종료일까지를 임기로 함

▶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 성과목표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연계 성과 활용·확산
- 한의 의료기술의 급여 반영, 신의료기술 인증
- 한의 임상연구 수월성 및 질 제고
- 양약·한약 병용투여 지침개발 및 활용 기반 마련
-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 센터 구축

단계	성과목표
1단계 ('20~'21년)	○ 한의임상연구 모형 개발 가이드라인 제공 ○ 한의의료서비스 실증연구 가이드라인 제공 ○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 ○ 한의임상진료지침 고도화 지원 ○ 한약에 최적화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구축) 모델 개발 ○ 약물상호작용 연구 수행 가이드라인 제공 * 양약·한약 병용 근거자료의 내용, 형식, 조건, 연구방법 포함
2단계 ('22~'24년)	○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인증 14건 이상 ○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인증 11건 이상 ○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지원 ○ 한의의료서비스 또는 한의임상연구 관련 장애요인 해소 성공 사례 확보 ○ 양약·한약 병용투여 임상지침 개발 완료 1건 이상 ○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 센터 구축 지원
3단계 ('25~'26년)	○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인증 20건(2단계 성과 포함) 이상 ○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인증 22건(2단계 성과 포함) 이상 ○ 양약·한약 병용투여 임상지침 개발 완료 2건(2단계 성과 포함) 이상 ○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목적의 경제성 평가를 포함하는 전향적 임상연구 4건 이상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성과를 활용한 신의료기술 인증 2건 이상

4단계 ('27~'29년)	○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및 인증 30건(3단계 성과 포함) 이상 ○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인증 34건(3단계 성과 포함) 이상 ○ 개발된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 보급·확산 ○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목적의 경제성 평가를 포함하는 전향적 임상연구 13건(3단계 성과 포함) 이상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 및 동 사업의 가이드라인개발연구 등 연구성과를 활용한 신의료기술 인증 2건 이상 ○ 동 사업의 한의의료기술최적화연구 등 ○ 한의의료기술 정책 반영* 2건 이상 * 연구성과를 활용한 한의의료기술 수가 개발 및 급여 반영 * 국가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실시, 지자체 사업 활용, 보건소 등의 공공사업화 *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또는 신설 ○ 양약·한약 병용투여 임상지침 개발 5건(3단계 성과 포함)완료 및 보급·확산 ○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 센터 8개소 이상 구축 완료

※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
※ 단계별 목표는 단계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 가능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질환별 한의 임상진료지침(CPG) 개발 및 인증 지원 ○ 대표 진료환경별 한의표준임상경로(CP) 개발 및 적용 지원 ○ 임상연구를 통한 질환별 한의 임상진료지침(CPG) 고도화 지원 ○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의 보급 및 활용 지원
한의의료 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 임상연구를 통한 한의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효과 연구 지원 ○ 문헌 및 자료를 활용한 한의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효과 연구 지원 ○ 적정 한의 치료기술 개발 및 경제성 평가 지원 ○ 한의치료기술의 정책 반영을 위한 자료조사, 정책 개발 지원 ○ 연구 결과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및 신의료기술 인증 지원
약물상호 작용 연구	○ 양약·한약 약물 상호작용 연구 지원 ○ 양약·한약 병용 투여 지침 개발 지원 ○ 양약·한약 병용 투여 지침 보급 및 활용 지원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구축 근거 자료 확보
질환별 한의중점 연구센터	○ 질환별 새로운 한의진단·치료 기술 개발 지원 ○ 질환별 한의진단·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지원 ○ 질환별 한의진단·치료기술의 작용기전 규명 지원 등
한의중개 개인연구	○ 한의 의료기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및 탐색연구 지원 ○ 한의약 전통 지식을 활용한 독창적인 신규 아이템 발굴 지원
사업 운영 지원	○ 연구주제 우선순위 선정 및 추진 분야별 세부 기획 ○ 예방·진단·치료, 요소기술(한약·침·뜸·부항 등), 질환의 층위 및 범주 구분 ○ 사업간 개별 과제 연구 내용 간 중복 조정 ○ 세부 과제의 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계획 수정·보완,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과제수행 장애요인 해소(식약처 IND 승인, 신의료기술 신청)를 위한 선도적 지원 * 약물병용 투여지침 개발에 필요한 연구결과 분석, 진행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공 ○ 세부과제 중간·최종평가 등 연구 관리와 지원 * 임상연구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세부과제 연구비 조정 포함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결과 확산 및 정책화 ○ 경제성 평가 지원

▶ 사업단 추진체계



▶ 지원대상

○ (사업단장 지원자격) 한의약 등 해당 분야에서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영관리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경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전문성과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지원자격(최소 경력 요건)

- 정교수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 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10년 이상
- 정부출연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 10년 이상
-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15년 이상

▶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 사업단장의 권한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운영 및 연구과제 관리 전반에 걸친 책임과 권한을 가짐

○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단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사업단 내 모든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사무국 구성·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목표한 성과 달성
 - ·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연구실적의 부진 등 합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세부과제 및 연구비 조정 가능
 -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의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 사업단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사업의 전주기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 ·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선행 사업인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연구개발 성과 포함)
 -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따로 정한 사항

▶ **사업단장의 임기**

○ 사업단장 임기는 사업단장 선정일로부터 사업단 종료일까지(~'29년)로 함

* 1단계('20～'21년, 2년), 2단계('22～'24년, 3년), **3단계('25～'26년, 2년), 4단계('27～'29년, 3년)**

- 연구성과의 미흡 또는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 시 해임·교체될 수 있으며, 지원중단·예산삭감·제재처분 등 엄중한 관리 예정

▶ **사업단장 근무 조건**

○ 사업단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 관리규정」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체결하는 협약 등에 따라 연구사업 수행 및 사업단의 운영 · 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전념해야 함(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

- 사업단장은 전임근무를 원칙으로 함
- 타 업무 참여(보직, 겸직 등)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불가(해당사업 연구수행에의 전념)
- 본 사업 참여 전에 수행하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단장 임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를 중단하여야 함

○ 다만, 총괄조정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음(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제3항)

○ 사업단장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경력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함

○ 동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활동(주식보유, 겸직, 참여 등) 불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사업단장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

▶ **사무국 구성·운영**

○ 연구·성과관리 및 행정지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세미나, 토론회 운영·지원),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을 지원

▶ **특기사항**

○ 주관연구기관은 한의약진흥원으로, 사업단장 임기 기간 동안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 사업단장은 계획서에 다양한 학문발전 및 특정 기관, 학회의 편중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단장은 1단계, 2단계 성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3단계 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4단계 단계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작성

○ 사업단장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 사업추진 결과로 얻어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 무형적 성과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예정이므로 관련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함

○ 연도별 사업 예산(변동 가능)

(단위: 억 원)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
가이드라인 개발	9.8	19.8	23.8	22.8	26.8	30.8	30.8	30.8	24.8	13	233.2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14.3	33.3	42.3	51.3	62.5	65.5	59.5	50.5	41.5	22	442.7
약물상호작용 연구센터	12.6	16.8	16.8	16.8	16.8	12.6	16.8	16.8	16.8	16.8	159.6
질환별 중개연구센터	22.5	30.0	30.0	52.5	60.0	60.06	60.0	30.0	30.0	30.0	405.6
한의중개 개인연구	7.8	18.2	28.6	28.6	28.6	28.6	28.6	28.6	20.8	10.4	228.8
사업단 운영비	9.9	6.9	6.9	6.9	6.9	6.9	6.9	6.9	6.9	6.9	72
기획평가운영비	1.7	2.7	3.3	4.45	4.8	4.8	4.8	3.3	2.9	2.2	34.9
계	**78.5**	**127.6**	**151.6**	**183.2**	**206.4**	**209.2**	**207.4**	**166.9**	**143.7**	**101.4**	**1,575.9**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규모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주요사항
- 본 RFP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제시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진 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

○ 일반적인 사항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및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참고

▶ **선정평가 기준**

적용가점	해당 없음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발표평가	1. 사업단장 역량 (50)	○ 사업단장의 연구역량(30) - 사업단장의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탁월하며 우수한가? ○ 사업단장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파급효과(10) - 사업단장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우수한가? ○ 사업단장의 연구사업 기획·관리 경험 및 능력(10) - 사업단장의 연구 사업을 기획·관리한 경험이 본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합한가?
	2. 사업단 운영계획 (50)	○ 연구개발 추진전략의 적절성(40) - 사업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비전 및 핵심 성공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20)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20) ○ 사업단 구성 및 경영계획의 적절성(5) - 사업단의 조직 구성 및 경영계획이 사업단의 목표에 맞게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사업단 종료 후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계획(5) - 사업단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확산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